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(채유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

2288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4월 02일 발 의 자 :채유미 의원(1명) 찬 성 자 :김재형, 김제리, 김종무, 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 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서윤기, 성흠제, 송명화, 송아량, 송정빈, 양민규, 이상훈, 임종국, 장상기, 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 한기영, 황규복
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○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, 나아가 아동의 생존권 확보 및 안전한 삶을 효 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들의 올바른 급식지원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있어 시장의 급식단가 예산 확보 사항을 반영(안 제12조의2제1항).
- 나.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청, 자치구, 관련 법인 ·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의2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) ① 시장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2 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하여 아동 급 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, 자치구,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3조제3호 중 "3"을 "3.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4"를 "4.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12조의2(아동 급식지원을 위한
	노력) ① 시장은 「아동복지
	법」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
	아동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
	급식 제공을 위하여 아동 급식
	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
	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
	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
	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	②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의 원
	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
	교육청, 자치구, 법인 • 단체 등
	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
	야 한다. 이 경우 아동 급식지원
	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
	있다.
제13조(아동 사회안전망 구축) 시	제13조(아동 사회안전망 구축)
장은 아동의 학대 및 위험으로	
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	
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	
추진할 수 있다.	<u>.</u>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	3.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

구축	구축
4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	4.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
축	축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